

아르메니아공화국 교육과학문화체육부와  
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간  
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

# 아르메니아공화국 교육과학문화체육부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간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

아르메니아공화국 교육과학문화체육부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(이하 “양측”이라 한다)는 양국 간 우호 관계의 확대, 강화와 양측 청소년 분야의 협력 증진을 희망하며,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.

## 제 1 조

1. 동 양해각서의 목적은 정보 교류 및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, 활동에 대한 참가를 통하여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.
2. 동 양해각서에 의한 활동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각 측의 가용예산과 자원에 따라 이행된다.

## 제 2 조

동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- 가. 청소년, 청소년 기관 대표자 및 정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관계자 간의 상호 경험 교류
- 나.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의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초청
- 다. 청소년 분야 출판물, 영상물, 경험 및 기타 정보 교류
- 라.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, 청소년 축제 및 기타 청소년 행사에 참가 장려
- 마. 기타 양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양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한 청소년 협력사업

### 제 3 조

제2조 가항에 명시한 청소년 상호 교류는 정확한 대표단 인원, 방문 일정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양측이 교류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.

### 제 4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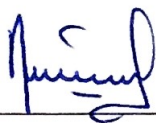
동 양해각서의 해석 및 적용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견은 양측의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.

### 제 5 조

1. 동 양해각서는 서명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다. 그 후 한 측이 6개월 전 서면 통보를 통해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5년의 기간으로 자동 갱신된다.
2. 동 양해각서의 종료는 양측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시행되고 있던 활동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3. 동 양해각서는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.
4. 동 양해각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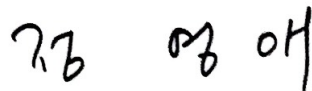
동 양해각서는 2021년 7월 20일 예레반과 서울에서 아르메니아어, 한국어,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으며,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아르메니아공화국  
교육과학문화체육부를 대표하여



장관 대행 바랍 두만얀

대한민국  
여성가족부를 대표하여



장관 정 영 애